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10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이상식 · 양부남 · 박용갑
김남근 · 김준환 · 김현정
복기왕 · 박해철 · 신정훈
권칠승 · 이정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검증 절차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위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1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생략)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② ----- ----- ----- ----- ----- -----.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u>경찰청장</u> ,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1. ----- ----- ----- ----- ----- ----- ----- ----- ----- <u>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u> ----- ----- -----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